

- (3) 남아프리카 - 장기간에 걸친 인종차별체제, 인종간 갈등의 양상,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저항운동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원
- (4) 캄보디아, 중미 제국, 스리랑카 - 장기간에 걸친 내전, 국가권력 및 내전 당사자 모두에 의한 인권침해, 시민사회의 부존재 또는 미약한 형성
- (5) 구 유고, 루완다 - 인종갈등에 바탕을 둔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의 내전 및 국제전을 계기로 한 대규모 학살, 시민사회의 미약한 형성 또는 사실상 부재

3. 인권침해의 주된 양상

- (1) 극단적으로 잔혹한 대규모 인권침해 (캄보디아 킬링필드, 루완다의 학살, 구 유고의 인종청소, 아르헨티나, 칠레의 대규모 실종, 살해)
- (2) 이념적인 광범위한 지배체제
- (3) 인종차별 체제
- (4) 강력한 국가권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이념적 지배와 상대적으로 소수에게 집중된 인권침해

4. 인권침해의 이념적 기반

- (1) 국가안보, 좌익혁명봉쇄
- (2) 인종차별
- (3) 공산주의 이념
- (4) 분리운동진압, 국가의 통일 유지

5. 민주화 이행의 원인과 양상

- (1) 구정권의 국내적 권력 상실 - 니카라과(내전 패배), 우간다(군사 쿠데타), 동유럽 (체제유지 능력 상실, 경제 파탄)
- (2) 구 정권의 국내적 권력 유지, 기타 원인(전쟁패배, 경제파탄) - 아르헨, 남미
- (3) 국내적 권력 유지, 신정권과 협상 - 남아프리카 공화국
- (4) 민주봉기 - 필리핀, 인도네시아
- (5) 내전종결 협상 - 엘살바도르 등 중미
- (6) 적국에 의한 점령 - Nurenberg, Tokyo 전범재판
- (7) 국제사회의 강제적 개입 - 구 유고슬라비아, 루완다, 캄보디아
- (8) 국가체제 붕괴, 통일 - 동독

6. 이행기의 사회적 역관계

- (1) 정치적 제약요인이 없는 상황 - 이차대전 후 전범재판
- (2) 구세력이 정당성은 잃었으나 무력을 장악한 상황 - 그리스, 아르헨티나
- (3) 군부가 협상 또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민간정부 수립을 허용하고 무력을 장악한 상황 - 칠레
- (4) 점진적인 이행과 대중적인 용서 - 스페인
- (5) 해결되지 않은 무력투쟁의 결과 협상에 의한 신정부 수립 - 엘살바도르
- (6) 인종, 민족, 종교갈등 -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구 유고, 루완다
- (7) 이와 같은 요인들과 함께 검찰, 사법기구의 성격 및 효율성, 국가 관료제도의 존재 여부, 경제적 자원 등이 과거청산의 가능성과 형

태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루완다나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들처럼 법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검찰과 사법기구가 사실상 해체되었거나 국가관료제도가 기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거청산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고 그 과정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청산의 이름아래 새로운 인권 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⁸⁾. 우간다를 비롯한 몇몇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 과거청산 작업이 흐지부지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진실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이었다.

7. 국제사회의 대응

- (1) 국제사회(유엔)의 강제적 군사 개입 - 구 유고, 루완다
- (2) 국제사회의 정치적 개입 및 비강제적 군사 개입 - 캄보디아, 동티모르
- (3) 국제사회의 적극적 정치적 개입 - 하이티, 엘살바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 (4)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 - 동유럽
- (5) 국제사회의 무관심

8. 구정권 범죄의 처리양상

- (1) 진상조사 및 처벌 - 그리스
- (2) 진상조사와 처벌 이후의 사면 - 아르헨티나
- (3) 군사정권에 의한 자기사면 이후 진상조사, 그후 제한적인 처벌제도 - 칠레

8) 루완다의 상황에 관하여는 Mark A. Drumbl, 'Rule of Law amid Lawlessness: Counseling the Accused in Rwanda's Domestic Genocide Trials',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vol.29 (1998) 참조.

- (4) 국민투표에 의한 군사정권 자기 사면 승인과 진상조사 - 우루과이
- (5) 진상조사 및 제한적 사면 또는 처벌 - 남아공
- (6) 진상조사 -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처벌문제 미해결)
- (7) 진상조사 및 사실상 불처벌 - 필리핀
- (8) 비사법적 인적 청산 - 동유럽
- (9) 국제재판 및 국내재판을 통한 처벌 -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 (10) 국제재판 움직임 - 캄보디아, 동티모르

V. 진실위원회(TRC)의 경험과 교훈 - 남아프리카 공화국 TRC를 중심으로

1. 진실위원회의 모습들⁹⁾

- (1) 대통령 또는 행정부가 설치한 조사위원회 - 볼리비아¹⁰⁾, 아르헨티나¹¹⁾, 우간다¹²⁾, 필리핀¹³⁾, 칠레¹⁴⁾, 차드¹⁵⁾

9) Priscilla B. Hayner, 'Fifteen Truth Commissions - 1974 to 1994: A Comparative Study', Human Rights Quarterly, vol.16. No. 4 (1994); Margaret Popkin and Naomi Roth-Arriaza, 'Truth as Justice: Investigatory Commissions in Latin America', Law & Social Inquiry, vol.20. No.1 (Winter 1995); Human Rights Program Harvard Law School, TRUTH COMMISSIONS: A COMPARATIVE ASSESSMENT (1997); Graeme Simpson, A Brief Evaluation of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ome lessons for societies in transition, Centre for the Study of Violence and Reconciliation (October 1998).

10) 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into Disappearances. 1982년 10월 민정 이양으로 선출된 Hernan Siles Zuazo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진실위원회. 1967년부터 1982년 사이에 발생한 155건의 실종사건을 조사. 위원회의 조사와 재판, 민간차원의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볼리비아의 민주화 이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11) National Commission on the Disappeared (CONEDEP; Comision Nacional para la Desaparicion de Personas). 1983년 Rqul Alfonsin대통령이 1976년부터 1983년 사이의 더러운 전쟁기간 중 실종사건을 조사하도록 설치. 약 9,000건의 실종사건을 조사하였으며 Nunca Mas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간. 정치적으로 어려운 민주화 이행기에서 진실을 조사

(2) 입법부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위원회 - 우루과이¹⁶⁾, 독일¹⁷⁾, 남아프리카 공화국¹⁸⁾, 스리랑카¹⁹⁾

하고 책임자들의 재판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그 이후 과거청산 문제를 다룬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다.

- 12) Commission of Inquiry into Violations of Human Rights. 1986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Museveni정권이 설치. 조사대상은 광범위하나 자의적 체포와 구금, 고문과 살해의 조사에 초점. 그러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신뢰를 상실하였다.
- 13) Presidential Committee on Human Rights. 1986년 Corazon Aquino대통령이 설치. 1972년 이후 인권침해를 조사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존경받는 인권운동가인 Jose W. Diokno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정부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1987년 초 Diokno상원의원의 사망과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공격사건으로 모든 위원이 사임함으로써 활동이 중단되었다.
- 14) National Commission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1990년 3월 Aylwin대통령이 17년에 걸친 군부정권 기간동안의 사망 또는 실종 사건을 조사도록 설치. 2,920건의 사건을 조사. 두 권의 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 후 Aylwin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동시에 군부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함.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National Corporation for Reparation and Reconciliation을 설립하는 등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짐.
- 15) Commission of Inquiry into the Crimes and Misappropriations Committed by Ex-President Habre, His Accomplices and/or Accessories. 1990년 12월 불법적인 감금, 암살, 실종, 고문과 야만적인 대우, 그밖의 신체적, 정신적 공격과 인권침해 및 마약밀매 조사, 그리고 고문장소와 그 도구의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됨. 1992년 발간된 위원회 보고서는 약 40,000건에 달하는 살해사건을 공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진실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가해자들의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또한 그들의 사진을 실었다.
- 16) Investigative Commission on the Situation of Disappeared People and its Causes. 1985년 4월 의회가 설치. 164건의 실종사건 조사. 그러나 우루과이의 경우 아르헨티나 및 칠레와 달리 군부정권이 저지른 주된 인권유린 형태가 실종이 아니라 광범위한 고문과 불법 투옥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고 실종사건만 조사한 점, 그 보고서가 널리 공표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진지한 조사가 아닌 정치적 의식 (political exercise)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는 인권단체인 SERPAJ(Peace and Justice Service)가 Nunca Mas라는 제목으로 1989년 발간하였다.
- 17) Study Commission for the Assessment of History and Consequences of the SED Dictatorship in Germany. 1992년 3월 독일의회가 설치. 모든 정부 기록과 Stasi 파일을 조사, 공산체제의 유지방법을 조사하고 서독의 정책이 공산체제를 강화하거나 민주화 운동의 성장을 방해한 점이 있는지를 평가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 18)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는 백인정권과 ANC사이의 Kempton Park 협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 따라 제정된 잠정헌법은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면을 규정하였으나 ANC정부는 1995년 Promotion of National Unity

(3) 민간차원의 조사위원회 - 남아프리카 공화국 ANC Commission I, II²⁰⁾, 루완다²¹⁾

(4) 국제기구가 설치한 조사위원회 - 엘살바도르²²⁾, 동 티모르²³⁾

(5) 인권단체에 의한 보고서 발간²⁴⁾ - 우루과이²⁵⁾, 파라과이²⁶⁾, 브라질²⁷⁾, 러시아²⁸⁾

and Reconciliation Act를 제정하여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가해자에 대한 사면절차와 결합시킴으로써 협정 및 잠정헌법의 제한을 뛰어 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던 과거청산 문제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 19) Disappearances Commissions. Commissions of Inquiry Act 1984에 의하여 1988년 1월 이후 지역별로 실종사건을 조사하는 3개의 위원회가 1995년 설치되어 2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20) 1차 위원회: Commission of Enquiry into Complaints by Former ANC Prisoners and Detainees. 1992년 3월 Mandela ANC의장이 3명의 위원 임명하여 설치. 2차 위원회: Commission of Enquiry into Certain Allegations of Cruelty and Human Rights Abuses Against ANC Prisoners and Detainees by ANC Members. 1차 위원회의 보고서 발간 후 Mandela의장이 미국, 짐바브웨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각 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인권침해 조사.
- 21)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vestig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Rwanda Since October 1, 1990. 루완다 인권단체들의 요구와 정부 및 반군사이의 Arusha협정에 따라 국제인권단체인 Africa Watch, Federation Internationales des Droits de L'Homme, Union Interfricain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Peupled,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가 설치. 보고서 발간.
- 22)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Truth for El Salvador. 1991년 4월 유엔이 중재한 엘살바도르 정부와 반군(FMLN)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심각한 폭력행위를 조사할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유엔 사무총장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3명의 국제적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From Madness to Hope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간하고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이 있는 40여명의 이름을 공개. 보고서 발간 직후 정부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일반사면.
- 23)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East Timor to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54/726, S/2000/59, 31 January 2000 참조.
- 24) Louis Bickford, 'The Archival Imperative: Human Rights and Historical Memory in Latin America's Southern Cone', Human Rights Quarterly, vol. 21, No.4 (1999) 참조.
- 25) SERPAJ, Nunca Mas, 1989
- 26) Committee of Churches, Nunca Mas, 1990.
- 27) Arquidiocese de Sao Paulo, Brasil; Nunca Mais, 1985.
- 28) 1987년 설립된 Memorial이라는 단체는 1917년 이후 공산정권에 의한 인권유린을 피해자의 이름과 국가정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포함하여 여러 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우루과이
의문사건상해범의
인권 문제

2. 진실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그 한계

(1) 진실위원회에 대한 평가의 전제

(가) 완전한 진실과 정의(total truth and justice)는 불가능하다.

- 진실과 정의의 추구가 가진 정치적 성격
- 진실에 대한 요구와 그 요구를 실현하는 정치적 조건 사이의 긴장
-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 상호간에 서로 다른 진실
- 인간의 가진 인식능력의 한계

(나) 정치적 조건과 제도적 한계의 문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려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성격은 이행기 동안 작동하는 정치적 조건과 제도적, 헌법적 한계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진실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제반 환경과 제도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 민주적 개혁의 한 수단으로서 진실위원회

과거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고 과거체제의 유산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 민주적 공고화는 정부의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 과거문제를 다룰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실위원회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라) 윤리적 문제로서의 진실과 정의

과거청산은 미래지향적인 민주화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지 미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수단의 의미로만 다루어서는 안된다. 진실과 정의의 추구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더욱 근본적인

요청으로부터 정당화된다. 진실과 정의는 그 자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범위가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분위기를 정착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2) 진실위원회 활동의 의미

(가) 피해자와 생존자들, 그리고 국가 전체에게 과거를 돌이켜 보고 인종차별 체제의 잔인성을 확인하게 하는 공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과거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나) 과거청산의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는 사면 등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시각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시각으로 수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진실화해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과거청산 논의는 양립이 불가능한 정의(justice) 대 화해(reconciliation) 모델에서 피해회복을 통한 정의(restorative justice) 대 가해자 처벌을 통한 정의(punitive justice)의 토론으로 전화되게 되었다.

(다) 기소와 사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조치를 결합시킴으로써 과거 인권침해를 다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고 더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라) 특히 가해자의 공개적 증언을 끌어내 사회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TRC의 문제점과 한계

(1) 진실과 사면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요구

진실위원회에 대하여 흑인들은 인종차별 정권이 저지른 인권침해의 진실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었던 반면 백인들은 사면을 위한 절차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진실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상황에서 흑인들은 백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반면, 백인들은 인권침해의 혐의를 받는 백인들이 진실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인권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진실위원회의 절차는 백인을 상대로 한 마녀 사냥(witch-hunt)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2) 구성의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

진실위원회는 가장 광범위한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에서는 물론 직원들의 충원과정에서도 적대적인 정치적 집단들을 그 과정에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내부에서 많은 정치적 갈등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은 물론 신뢰성도 저하되었다.

(3) "인권"을 방패로 한 가해자측의 문제제기

가해자인 백인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절차를 동원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회의 조사진행을 방해하였다. 가해자들이 제기하는 헌법소송 등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소모되었으며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4) 다양한 방법론을 결합한 구조의 문제

진실조사를 위한 준사법적 절차 및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신적 치료를 기대하는 심리적 감성적 제도를 결합한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TRC의 창조적인 실험이었던 반면,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가지 절차를 하나의 제도에 결합함으로써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진실을 조사함으

로써 가해자에 대한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조사과정은 준사법적인 절차를 통한 엄격한 사실확인 그 과정에서 가해 혐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피해자 중심의 절차는 방해없는 공개적 발언과 인정의 장을 요구함으로써 서로 충돌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 "진실"의 다양한 모습

진실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진실이 결코 일면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진실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분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드시 구별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 사이에도 서로 다른 내용으로 진실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가해자 집단에서 그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자들은 구체적인 인권침해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한 적이 없는데 범죄를 실행한 하급자들은 그들의 상사로부터 지시받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조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 진실의 확인이라는 차원에서 쉽지 않은 문제로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접 실행한 자들의 범죄를 확인하는 증거는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비하여 상급자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는 대단히 어려웠다. 따라서 권력체계를 따른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 범죄를 밝히기보다는 하급 범죄자들의 개별적인 일탈행위들로 정리하고 넘어갈 위험이 진실위원회가 활동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6) 개별 사건의 진실과 구조적인 문제 사이의 긴장

진실위원회는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건에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

면 일을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피해자를 위해 보상해야 하는 반면, 그러한 개별적인 사건들의 집합을 초월하는 의미에서 국가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바로잡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그 두 가지 목표 사이에 긴장과 충돌이 야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특히 개별사건의 진상확인에 집중할 경우,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원인이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칠 가능성이 많았다. 인권침해를 일으킨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적 맥락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자가 인권을 침해당한 원인이 다양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예컨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나 인종 때문만이 아니라 가난, 성, 사회적 여건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원인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모든 원인을 흑백의 인종갈등 혹은 정치적 이유로 환원하는 것은 사실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진실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인권침해를 일으킨 과거의 분쟁 혹은 체제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형태의 인권침해가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실종과 살인 등이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억압적인 체제아래서 감시와 억압을 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 설명할 수 없고 특히 여성들의 특수한 고통들이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 NGO와 사이의 협력관계 건설 실패

NGO는 TRC의 동반자이자 TRC의 활동을 감시, 비판하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었다. NGO들은 TRC의 설치와 법제정, 인권유린의 조

사와 문서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진실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진실위원회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TRC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NGO와 거리를 둬으로써 시민사회 및 피해자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9) 백인정권의 국가권력기관과 법체계에 의지한 활동

협상에 의한 민주화 이행(negotiated transition)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환경으로 인하여 ANC정부는 인종차별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해 온 백인정권의 국가관료기구 및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진실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많은 인권침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정보, 수사기관들의 비밀성과 무책임성 등의 속성으로 인하여 조사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진실위원회의 활동결과 이들 기관들을 개혁하는 데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4. TRC의 교훈

(1)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들

- ① 피해자의 조직화 : 피해자들이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들, 혹은 TRC에 의하여 일방적, 수동적으로 대변되기보다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기들의 목소리를 직접 사회와 진실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피해자들 및 이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② 종합적인 피해자 치유 대책 : 자신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고통을 인정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그러한 공적인 장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지 공개된 장소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심리적 치유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섬세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경우에 따라 공개된 증언과정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이 격화되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진실위원회와 NGO들은 피해자의 증언 준비, 증언 과정과 그 후 절차에서 심리적, 정신적 안정과 치유가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③ 다양하고 또한 변화하는 피해자들의 요구 : 진실을 조사하기에 앞서 정책결정자들이 빠지는 오류의 하나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단순하고 또한 정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들은 진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보상을 포기하고 가해자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들의 요구와 감정적 상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사항은 물론 그들의 분노, 슬픔, 정신적 증후군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구조 필요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감정과 요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실조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진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초기에는 진실을 토대로 한 용서를 강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예컨대, 보상에 대한 요구로 전화, 발전하며 과거의 잔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새롭게 조명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감정이 격화되어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 또 피해자마다 원하는 보상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특히 가해자들에 대해 직접 민사적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

운 경우 피해자들은 좌절감과 분노에 빠지게 되고 이를 표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장, 단기별, 정신적, 물질적 보상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진상조사 과정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피해자들을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원활한 조사를 위한 대책

① 증인 보호 및 증거확보를 위한 대책 : 과거 인권침해는 국가권력이 직, 간접으로 저지른 체계적인 범죄이며, 진실위원회가 활동하는 과정에도 이들 권력기관 및 그 기관의 인적구성은 별다른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기관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 인멸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과거 인권침해 범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증거의 제출과 증언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금전적 유인과 함께 증인의 물리적, 정신적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조사자들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지원체계 : 지금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치료대책이 강조되었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조사과정에서 조사요원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 또한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충분한 재정과 인력 확보,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의 지원 및 협력 체계

④ 보고서의 준비와 발간, 광범위한 배포

(3) 자료 및 조사내용의 database 구축 및 조사완료 후 공개 방안

(4) 다른 나라의 경험 전수 및 교류, 국제적 지지 확산 방안

(5) 피해자 및 시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

TRC의 활동과정에서 드러난 오류의 하나는 TRC가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와 홍보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이며, TRC가 활동을 시작한 이상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TRC에 접근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었다.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TRC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 설립과 활동을 안다고 하여도 국가권력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일상생활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6) 위원회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대책

진실위원회는 최선의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낸다고 하여도 단기적으로는 많은 실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조사결과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 비하여 더 큰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위원회에 대한 실망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과거 체제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경제, 법제도적인 근본 모순은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진실 조사가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sense of impunity가 피해자와 가해자,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과 제도, 그리고 민주화 과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실조사 후 피해자에 대한 보

상대책이 없을 경우에도 새로운 좌절감이 확산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편 과거 범죄에 대한 진실조사가 경제 및 민주적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가진 사회집단이 강력하게 존재할 경우 진실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끊임없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며 진실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경제발전 및 민주화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VI. 맺는 말

1. 고통스러운 과정

진실은 찾아내는 것도 몹시 힘들지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사회 일반 구성원들에게도 극히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며,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왜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공통의 이해를 만들어내고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청산을 하려는 어떤 사회도 이러한 대립과 긴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가해자 문제를 고려하는 관점

진실위원회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공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단순한 피해자로서 자기들의 고통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화의 진전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편 가해자 개인 및 그 집단 역시 일차적으로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범죄적인 국가체제의 피해자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범죄자로만 치부하여 낙인을 찍고 방치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거청산의 과정은 물론 그를 토대로 한 사회적 안정과 화해, 민주적 제도 건설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해자 집단에 대한 치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²⁹⁾

결론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국가의 과거는 첫째, 전반적인 맥락속에서, 창조적이고도 공식적인 방식으로 기억해야 하며(remember in a contextual, creative and official way), 둘째, 다양하고도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는 기구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remember in a diverse and representative way), 셋째, 복잡한 인권침해의 원인과 양상에 알맞는 복합적인 방식으로(remember in a complex way)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과거청산이 진행되어야 한다(remember in a forward looking way).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식은 과거청산이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정당한 분노와 슬픔, 죽은 자가 결코 다시 살아올 수 없다는 데 대한 궁극적인 좌절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들이 민주화의 진전에 주체로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remember in a legitimizing way)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0091)

29) Brandon Hamber, 'How should we remember? Issues to consider when establishing commissions and structures for dealing with the past',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Dealing with the Past: Reconciliation Processes and Peace-Building", Belfast, Northern Ireland, 9 June 1998.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자 병 직 변호사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1. 의문사 진상규명과 인권보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되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상규명이라는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조사다.

의문사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수사'와는 다르다. 수사는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사 등)이 공소제기를 목적으로 벌이는 범죄사실의 확인과 증거의 발견 및 수집활동을 말한다.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나 요건을 갖추면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반면 의문사특별법의 조사는 사실확인이 목적이며, 조사자에게 법률상 특별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직접적인 강제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도 진상규명이란 사실확인을 목적으로 관련자를 소환하고 관련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실지조사를 하고 동행명령을 하는 방식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수사의 개념에 포함된다. 특히 직접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기소할 권한은 없으나,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사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문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피조사자들과의 접촉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 요구되는 인권보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2. 의문사위원회와 인권보호의 의미

일반 형사사법 절차상의 수사와 비교하여 의문사 위원회의 진상규명의 목적이란 현실적으로 그 요구의 정도가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식의 수단(권한)은 더 약하다. 따라서 의무의 중압감과 불충분한 수단 사이에서 과욕으로 인한 피조사자의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사전에 경계해야 한다.

의문사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관념상 두 가지 측면에서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첫째, 의문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란 목적을 위해 펼치는 조사활동은 바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청산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조사활동은 어떠한 경우든 인권보장의 본보기가 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관념이 등장한다. 진상규명이란 현실적 과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그보다 하위에 있는 피조사자의 부분적 인권은 희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피조사자의 인권이 수단화되어서는 의문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정당화되기 힘들다. 특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밖의 과욕적 조사행위는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결과는 의문사 위원회의 역사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3. 조사의 원칙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형사절차상 수사와 마찬가지로 목적에 따른 자유로운 계획에 의해 폭넓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피조사자

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한계의 준수를 위해 조사는 몇 가지 원칙 아래서 행해져야 한다.

가. 법률제한성

조사활동은 기본적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활동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다. 아울러 조사 활동은, 그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헌법의 울타리를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나. 필요성의 원칙

조사는 반드시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다. 특정 의문사와 관련 있는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고,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조사의 방식과 정도는 피조사자의 권리를 최소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사위원이나 직원은 실지조사에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예다(법 제22조 제5항).

다. 비례성의 원칙

조사의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조사활동으로 인하여 피조사가 침해당할 수 있는 이익 사이에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은 넓은 의미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포함된다.

라. 임의조사의 원칙

수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허용되는 임의수사의 원칙이 지배한다. 의문

사위원회의 조사도 임의조사가 원칙이다. 강제수사(조사)는 일반적으로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수사(조사)와 강제수사(조사)의 구분에는 학설에 따라 여러 기준이 있다. 법률의 규정,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여부, 법적 의무부과의 여부, 최저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이다.

의문사특별법에 의하면, 물리적 강제력이 허용되는 가장 좁은 의미의 강제조사는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동행명령장에 의해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2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피조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간접적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조사는 어떤 경우든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다.

4. 조사의 개시

조사는 의문사와 관련된 단서를 포착한 뒤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시해야 한다. 임의조사라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시민은 생활상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문사와 관련된 구체적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정보수집을 위한 조사는 경우에 따라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문턱이론').

단서의 포착은 진정인의 진정과 의문사위원회의 인지에 의한다(법 제21조). 진정의 내용이 각하사유에 해당될 경우 조사는 금지된다. 조사를 개시한 뒤에도 각하사유가 발견되면 조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법 제20조).

5. 조사의 방법

가. 진술서 제출요구

피조사자들(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세부적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나누어 요구하거나 질문서 방식을 주문할 수는 있어도, 진술서 작성 및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다.

회신이 없을 경우 확인 및 독촉을 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나친 독촉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조사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자발적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나. 출석요구

직접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출석요구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듭 독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동행명령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과 위원장의 동행명령장에 의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3호).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피동행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관한 증표와 동행명령장을 제시해야 한다(법 제22조 제11항 등). 그리고 법의 규정은 없으나 동행명령의 목적과 이유, 동행하고자 하는 장소를 설명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을 집행하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동행할 수는 없다.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법 제37조 제4호)을 고지하고 구두로 적극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강력한 요구와 설득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초과하여 명백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요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동행요구는 체포나 구속과 다르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요구되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확보한 진술의 사실인정능력(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진술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25조),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행명령에 응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를 주장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됨을 경고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진술청취

피조사자의 진술을 듣기 전에도 동행명령의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좋다. 피조사자에게는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진술내용을 조서형태로 기록할 경우, 진술이 끝난 뒤 작성된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있다. 녹음이나 녹화를 하고자 할 경우(시행령 제20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조사자가 기록이나 녹음 등을 거부할 경우에도 진술청취는 가능하다. 그 경우 진술이 끝난 뒤 조사위원 또는 직원이 청취한 내용을 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출요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제출받은 서류가 사본이나 등본일 경우에는 임의제출자가 그 소유권까지 완전히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원본이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 제출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간접 강제할 수는 있다(법 제37조 2호). 따라서,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작성해 두거나 촬영 등으로 증거의 기본 형상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바. 실지조사

실지조사를 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물론, 촬영 등의 경우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대상이다(법 제37조 제3항).

6. 기 타

가. 적법절차 조항의 적용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는 수사와는 달리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 수단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헌법 제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절차로 옮겨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신분증의 제시, 이유와 목적의 설명, 관계인에 대한 통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고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출석하여 조사받

을 경우 피조사가 원하면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사한 결과 취득한 증거도,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인정의 증거로서 사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형사소송에서 유죄에 대한 증거와 같이 엄격한 증거조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나. 동의의 한계

피조사자의 자발적 동의에도 한계가 있다. 진술청취를 심야에 한다든지, 장시간 계속하여야 하든지, 식사나 취침을 거른 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출물의 소유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 비밀유지

조사와 관련하여 얻은 피조사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 15조, 제35조).

그리고 조사 결과나 관련된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여서도 안 된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피조사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성 희 통 예 방 교 육

두 정 호 강사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법률안

□ 노동부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99. 2. 8 공포·시행)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지침을 발표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조문(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 제2조의 2(정의)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7조의 2(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1, 2호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지침 내용(요약)

I.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 사업주, 직장내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근로자,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나.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직장내 성희롱 여부 판단에 참고토록 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유형을 <별표1>과 같이 예시함

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II.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의무

1. 무엇을 성희롱이라고 하나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성적 언동 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말합니다.

▶ '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2. 누구에게 성희롱을 금지하나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내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종사자, 파견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III. 이것이 성희롱입니다.

1.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위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성희롱 관련 잘못된 생각

- 1)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 2)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 3)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친밀감의 표현이다.
- 4)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 5) 성희롱은 여성의 과도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이다.

조사기법 및 조사서류작성

신 현 덕 연구관

수사서류작성(조사기술·사례)

I. 조 사

제 1 절 의 의

조사라 함은 범죄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들에게 질문하여 임의로 그 진술을 듣고 사실의 진상을 발견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제 2 절 증 요 성

범죄의 진상을 가장 잘 알고있는 자는 누구보다도 범죄를 실행한 범인 자신인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진범인으로서 자신이 실행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자백만 한다면 사건의 진상이 명백해질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는 중요한 수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목 적

1. 수사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행한다.
2. 범인의 주관적요건(고의, 동기, 목적등)을 얻기 위하여 행한다.
3. 수사한 결과 얻은 추정을 확인할 목적으로 행한다.

제 4 절 근 거

1. 조사권

가. 위원회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의

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진정의 각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나. 위원회는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 제2항)

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제3항)

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출석요구권

위원회는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3. 동행명령장 발부권

전 2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제9항)

II. 진상조사 요령

제1절 기본적 태도

1. 조사에 임하는 자세

가. 단정한 복장과 용모

품위를 지니고 정정당당한 태도

나. 진실하고 성의있는 태도

다. 냉정침착한 태도

성을 내거나 감정적인 언어로 응대치 말 것.

라. 자신있는 태도

끈기있고 자신있는 태도로 질문과 설득

2. 조사관의 심적대비

가. 선입감의 배제

선입감을 가지지 말 것

백지로 돌아가서 순수한 감정으로 조사

나. 피조사자의 심적상태를 이해

피조사자는 조사관 앞에서 부인, 은폐, 후회등을 한다.

공정한 태도로 응대

다. 명예심 자존심 존중

피조사자의 명예심, 자존심을 손상치 않도록 언동

라. 끈기있는 기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강인한 기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는 태도

마. 확고한 신념

모든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확고한 신념을 갖고 조사

바. 조금히 서들지 말 것

유연한 태도로 임하는 자세

제2절 조사의 준비

1. 조사자료의 활용

관계법령 및 판례등을 연구

2. 조사방법의 검토

질문할 항목, 순서, 방법등을 연구

3. 조사실의 선정

정숙한 방으로 선택

가. 솔직한 진술을 하기 쉬운 장소

- 1) 기본적으로 정숙한 장소(작은 방실)
- 2) 외부를 바라다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옆은 커튼을 쳐 둔다.)
- 3) 피조사자의 표정을 관찰할 수 있는 채광이나 조명이 잘 된 장소

나. 임의성이 확보된 장소

- 1) 목봉, 죽도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 2) 부녀자 조사시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

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소

- 1) 조사시는 피조사자를 실내구석에 앉힐 것.
- 2) 책상위에 위험물(화분등)을 두지 말 것
- 3) 조사중 이석시는 간수자를 두어야 한다.

4. 조사요원의 수

참여인의 참여

보조자 필요시 3인까지 무방

5. 조사관의 선정

조사관은 상대방 연령, 지위등 참작

※ 고급공무원의 경우 간부급으로 선정

Ⅲ. 조사 기술

제 1 절 의 의

1. 조사는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기술
2. 범죄의 발생을 사람의 소질과 환경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피조사자 인간성 파악
3. 조사관 심리학, 인간학적 지식과 경험을 길러야 한다.
4. 피조사자의 지식정도, 연령, 성, 종교, 정치성, 사회적위치, 교육정도에 따라 조사방법 결정

제 2 절 조사의 일반적 유의사항

1. 용어를 조심할 것

가. 신분에 적응한 언어사용

나. 부드럽고 세련된 말 사용

※ 사실을 말해보시오(범행자백하시오×)

다. 가벼운 느낌의 표현방법

※ 어떻게 하다가 이런잘못을 저질렀느냐(왜 죽었느냐×)

라. 부적당한 말 삼가할 것

※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결합, 약점

마. 인격을 무시하는 말

※ 자식, 개새끼등

바. 모욕적, 조소적 말, 기망적인 말을 금할 것.

2. 기억환기하기 쉬운 순서로 질문

3. 요점 질문

4. 진술의 진의 확인

※ 그 자를 죽이려 했다. - 그 자가 누구인가등

5. 피조자의 유리한 사항도 청취

6. 진술을 도중에서 좌절시키지 말 것

피해자는 하체까지 전부 진술을 취하지 않게. 1번은 - 취하지 않게.
조사원이 피조자의 진술을 좌절시키지 않게.

제 3 절 신문의 기술

1. 전체법과 일문일답법

2. 자유응답법(자발적진술)과 선택응답법(문답식진술)

제 4 절 신문의 방법

1. 결정문 : 비교적 암시성이 적다.

※ 그 때 본것은 무엇입니까

2. 선언문 : 암시성이 강하다

※ 양복색깔은 회색, 백색, 검색등

3. 긍정문과 부정문 : 진실한 진술을 들을 수가 있다.

※ 그 양복은 백색이었지요 등

4. 전제문(돌발적 신문) : 실패때 중대한 지장

※ 어제 OO집에 간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5. 유도신문

6. 완전선언문 : 실무활용무방

※ 양복색깔은 흑색입니까

7. 불완전 선언문 : 심리적 경향의 부담을 갖는다.

※ 이것이 갑을 찢었던 칼인가요. 이칼을 가지고 갑의 등뒤에서 어깨와 등을 찢었던가요

제 5 절 일반적 조사방법

1. 모순추궁방법

가. 소문다답

- 세밀하게 반복질문

- 불합리 모순점 발견

나. 모순된 점은 한꺼번에 모아 추궁

다. 모순된 점은 회오의 표정이 나타났을때 추궁

2. 급소를 찌르는 방법

가. 회오번민할 때

나. 부인이나 묵비할때 효과없다.

다. 성격약한 자, 자살염려자 부적당

3. 힌트를 주는 방법

가. 조사관이 모르고 있다고 오신때 알고있다고 배짱을 보여준다.

나. 자백자세보이다가 주저할때

다. 기간의 경과로 잊어버려 생각이 안난다고 인정될 때

라. 모순된 진술이 있다고 그것에 대한 심증 얻을때

마. 힌트주는 방법

- 1) 모호하게 표시
- 2) 간접적으로
- 3) 범행일시등은 윤곽만 표현
- 4) 압수된 물건(흉기)제시
- 5) 필요한 최소한도

4. 증거제시 요령

가. 증거제시 시기

- 자백때
- 석방(부인)때 최후의 수단

나. 방법

- 확신되는 것
- 장물, 범행용구는 제시전 모양, 특성, 수량 확인
- 증거물은 피조사자가 손 못대게

5. 변명에 대한 조사요령

가. 변명의 기회주고

나. 확인하는 뒷받침 수사

진실여부 규명

6. 피조사자 표정의 관찰판단방법

가. 허위진술때

- 1) 시선을 피한다
- 2) 손을 흔들거나 몸을 굽는다.
- 3) 침착성의 결여

4) 얼굴색 붉은색으로 또는 창백

5) 흥분, 방황

6) 눈감박이고 코를 실룩거린다

7) 불필요한 질문한다

나. 자백전에 잘 나타나는 표정

1) 진실미가 있다.

2) 정면을 향한다

3) 말을하지 않는다

4) 얼굴빛이 변한다

5) 눈 코사이에 주름이 생긴다

6) 눈물을 흘린다

7) 발을 뺀고 앉아운다. 울부짖기도 한다

8) 땀을 흘린다

9) 부르르 떠다

10) 목이 마르고 입술이 하얗게 된다

11) 침을 삼킨다

12) 목줄기가 움직인다

13) 물을 청한다

14) 용변을 호소한다

15) 손을 꼭 쥐다든지 머리를 책상에 댄다

다. 자백후 잘 나타나는 표정

1) 안심하는 기색이 보인다.

2) 얼굴빛이 좋아진다

3) 친근감을 갖고 농담도 한다

4) 식욕이 좋아진다

5) 잠을 잘 자게된다

7. 피조사자에 상응한 조사요령

인간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한 조사방법을 강구한다.

가. 허장성세하고 고압적인 자나 이유만 늘어놓는 자

- 1) 피조사자의 도발에 말려들어 격앙되지 않아야 한다.
- 2) 침착성을 갖는다.
- 3) 따질때는 이론투쟁을 하지 말 것
- 4) 사소한 비행을 즉석에서 시정시킨다. 소년의 경우 흡연행위를

고친다

나. 성격이 약한자

- 1) 처지이해하고 사정을 잘 들어준다.
- 2) 친근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유도에 말려들기 쉬우므로 주의해야한다
- 4) 급소를 찌르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므로 완곡하게 조사한다.

다. 감격성이 강한 자

성의를 갖고 대하면 사실 자백한다.

라. 조잡한 성격을 가진 자

당신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심리적 변동을 갖는다.

마. 완고한 자

- 1) 단도직입적으로 조사
- 2) 적접적인 표현 조사

바. 은폐하는 자

- 1) 아무리 설득해 줌처럼 자백하지 않는다.
- 2) 이미 입수된 자료를 검토 추궁

사. 타락한 자

- 1)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설득
- 2) 동정심을 표시

아. 우둔한 자

전체부인한다. 실태와 증거로 조사

자. 교활한 자

입수된 자료중 허위술책의 유무를 검토

차. 고령자

과거의 그리운 화제나 당시 유행했던 말이나 일들을 들추어 그
것을 이용하면서 조사

카. 동정심이 많은자

누가 이기는가 식으로 피조사자의 자신을 꺾어버린다.

8. 부인하는 피의자의 조사요령

가. 부인의 원인규명

1) 피조사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소

가) 형벌이 뒤따른다는 공포

나) 사회적 지위, 명예가 손상된다는 고통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을 배신한다는 의리감

라) 형벌의 면제, 감경을 위한 일부분의 심리, 예컨대 범행시는
주취상태였다는 변명등의 그것

2) 조사관의 태도나 조사방법에 기인하는 요소

가) 불손하고 오만한 태도

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 조그마한 진술차이를 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힐난할 때

라) 공명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때

마)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는 인상을 줄 때

※부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3) 부인에 대처 방안

가) 신빙성없을때 경청

나) 진술을 많이한다. 그 가운데 모순점 발견

다) 수집된 증거와 진술 중 모순점, 불합리점 수집 추궁

4) 부인피의자에 대한 조사방법

가) 변명에 대한 확인수사

나) 성의와 설득으로 자발적 진술추궁

다) 범죄정당화의 심리를 이해

“도둑놈에게도 서툰어치의 이유가 있다”는 속담처럼 범죄인은
범죄정당화의

심리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러한 심리를 이해해 준다.

라) 인격의 존중

권위적, 위협적, 사술적, 조사태도 지양

마) 사전수사의 철저와 면책불능의 관념 조성

사건과 관계없는 경력하찮은 삽화까지도 조사해놓고 이야기
하여 자백한 예가 있다.

나. 부녀자

1) 여성참여인을 참여

2) 단독으로 조사할 때는 조사실의 출입문을 열어놓는다.

3) 동정적으로 조용한 조사

4) 가정생활등 사생활관계는 필요이상 질문을 금한다.

5) 가정부인의 경우, 사건을 비밀약속이 효과적

6) 야비한 언사나 몸예다 손대지 말 것

7) 생리관계 고려조사

9. 조사관의 교체요령과 조사보조관

가. 조사관의 형

1) 피조사관에게 경멸당하는 형

가) 성격이 약하다는 인상

- 언어, 동작, 정신적 박력

- 적극추궁할곳에서 중단

- 시선을 피하며 조사

나) 불필요하게 작위적이고 비열한 행동

- 직무상 부득이 조사등

- 속이 들여다 보이는 언행

다) 정의에 대한 정열이 없는 사람

- 불친절, 피동적, 사무적인 형

2) 피조사자에게 미움을 받는 형

가) 오만한 언동 태연히 하는 사람

- 자기가 판,검사인양 권위적인 태도

나) 무언가 바라는듯한 오해블러 일으키는 사람

다) 필요없이 프라이버시를 캐는 사람

라) 불필요한 조사를 하는 사람

3) 존경받는 형

가) 의연한 태도

나) 인정미가 넘치며 언동에 선, 악 규명 의지

다) 정의감, 끈기, 자신이 풍기는 형

라) 친절하며 인간적 섬세한 배려하는 자

나. 교체요령

- 1) 완강한 부인으로 소기성과 없으면 빨리교체
- 2) 반항적, 감적적인 때 교체
- 3) 단시간에 자주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4) 교체이유는 근무관계 빙자효과
- 5) 교체조사관이 "자백했느냐", "나를 만만히 보지마라"등 삼가할 것
- 6) 교체때 전조사관부터 조사상의 "포인트" 성격등 자료인수
- 7) 가급적 상위직 간부로 교체가 효과적
- 8) 조사보조관의 보조방법
 - 가) 무마역, 체념시키는역, 미움받는 역, 밀어내는 역이 효과적
 - 나) 질문자료가 없을때 짧은 발언 역
 - 다) 중요사항의 조언을 사전 협의

10. 조사후 절차

- 가. 진술조서 작성
- 나. 조사결과 보고
- 다. 조사경과의 기록
 - 일시, 장소, 조사시간, 결과
 - 논쟁될 사항 기록

IV. 조사서류 작성

제1절 수사서류의 의의

1. 협의의 수사서류

- 가. 수사기관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

- 나.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로써 수사기관이 수집한 서류 중 내용의미만으로 증거로 되는 것

※보통 수사서류라 함은 협의의 수사서류다

2. 광의의 수사서류

협의의 수사서류와

가. 범죄협의를 없어 내사종결에 그치는 서류

나. 수사행정에 관한 서류등 수사에 관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

제2절 증거능력

1. 수사기관 작성 수사서류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8조 3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됨
2. 참고인,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서, 진술조서 및 신문조서는
 - 가. 진술의 임의성 확보
 - 나.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 다. 성립의 진정증명 되어야 한다.

※ 피의자 진술서와 동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 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제3절 진술서류 종류

1. 진술서, 확인서
2. 진술조서
3. 피의자 신문조서

제 4 절 진술서류의 작성요령

1. 형식적 요건의 구비

가. 진술거부권의 고지(피의자 조서작성때)

나. 냉정침착

다. 진술용어의 적격성

라. 감정적 용어회피

마. 진술자의 진술

바. 조서의 열람, 읽어들임

1) 증감변경의 진술

2) 열람, 읽어준다

사. 진술자의 서명, 날인

1) 서명후 날인(무인)

2) 서명, 날인(무인) 거부시 사유기재

3) 외국인의 경우 서명으로 대신

아. 작성년월일, 작성자 서명, 날인(무인), 간인

1) 작성년월일

2) 서명, 날인(무인), 간인

3) 작성장소

2. 임의성 확보

가. 형식적 요건의 완비

나. 내용의 합리성

다. 내용의 진실성

라. 조사과정의 기록

3. 일반적 유의사항

가. 목적과 노리는 바를 명확히

나. 내용정리, 이해한 후 기재

다. 순서있고 문맥 통하게

라. 조사관이 공감한 사실은 상세히 기재

마. 진술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상세히 기재

바. 변명과 이익사항 반드시 기재

사. 진술은 정확하게 기재

아. 모순의 조정

진술을 마음대로 합치시키지 말 것

자. 과거형과 현재형을 명확히 구별

제 5 절 피해자 진술조서(진정인)

1. 진정인, 고발인, 고소인, 참고인 모두 진술조서 작성

2. 전에 같은 내용 타 수사기관 제출여부

3. 피해상황, 피고소인등 관계

4. 참고인 및 증거유무

5. 진정취지 및 동기

6. 피해내용의 과장여부

7. 피진정인등에 대한 처벌 여부

제 6 절 목격자의 진술여부

1. 기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가능한 가

2. 목격한 동기

3. 피해자, 가해 현장상황 주변여건

제 7 절 서류작성순서

1. 진정인 보충조서 작성(진술조서)
2. 신고자 진술청취(참고인 진술조서)
3.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4. 목격자 진술청취(참고인 진술조서)
5. 현장조사 수사요원 진술청취

※ 참고자료 열람신청

6. 고발 및 수사의뢰
 - 범죄혐의 있다고 인정때

“사 례”

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서 *의문사*

| | | | | |
|---------------|---|------------------------------|---------------|-----------------------|
| 진정인 | 성명 (한자) | 김 ○ ○ | 주민등록번호 | 350115- XXXXXXXXXX |
| | 주소 | 서울 마포구 ××동 ××번지 <i>(기주리)</i> | | |
| | 의문사 대상자와의 관계 | | | 자 |
| 의문사 대상자 | 성명 | 박○○(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 600205- X |
| | 직업 | 학생(××대 4년) | 사망일시 | 1985. 6월 중순 시간불상경 |
| 피진정인 또는 기관 | 국 가 | | | |
| 진정개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정인은 가정주부이며, 의문사의 박××의 母임. 2. 진정인자 박××(당시23세)는 1985. 6. 30. 현재 ○○대학 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자 3. 의문사 박××는 운동권 학생으로 수사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4. 1985. 6. 10. 오전 시간미상경 아무런 말도없이 가출한 뒤, 6. 15.까지는 “잘있으니 염려말라”는 뜻으로 전화가 왔었으나 그 후는 일체 없었다. 5. 1985. 6. 30. 07: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전철역에서 서울역 방향 150미터 철길옆 웅덩이 물위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6. 두개골 골절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타살의 혐의가 있다. | | | |

진 술 조 서(진정서보충)

| | | | |
|---|---|--------|-----------|
| 성 명 | 김 × × | 주민등록번호 | 350115-×× |
| 직 업 | 무 직 | (전화 |) |
| 주 거 | 서울 마포구 ××동 ××번지 | (전화 | 363-××) |
| 본 적 | 서울 용산구 효창동 ××동 ××번지 | | |
| 위의 사람은 박××에 대한 의문사에 관하여 2000년 11월 5일 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조사 1과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 | | |
| 1. | 저는 16세때 마포중학교를 졸업, 망 박××(68세)와 결혼 2남 1녀의 가정주부입니다. | | |
| 1. | 저의 자 박××(피해당시 23세)가 1985. 6. 30. 07:00경에 서울 용산구 남영동 전철역 부근 철길 웅덩이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 실이 있어서 이에 사망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귀 위원회에 진정 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물으신다면 사실대로 임의진 술을 하겠습니다. | | |
| 이때, | 위 진술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 을 행하다. | | |
| 문 | 진술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이것인가요. | | |

이때, 당 위원회 접수 제××호를 보인바,

답 예, 제가 제출한 진정서가 틀림없고 그 내용도 사실대로 입니다.

문 이 내용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답 그 당시 관할 경찰서인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청와대까지
이 내용을 진정도하고 탄원도 하였으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
았던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망 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 저의 둘째 아들입니다.

문 진정내용을 말하십시오.

답 저의 아들 박××는 ××대 4학년에 재학중인데 1985. 6. 10.
오전 미상경 아무런 말없이 가출한 뒤 6. 15.까지는 전화연락이
있었으나 그 후, 연락이 끊긴 뒤 6. 30. 07: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전철역에서 서울역방향 150미터 철길 옆 웅덩이 물위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사망원인이 규명 안되었으므로 이를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3월 3일
 3월 3일
 3월 3일

문 박××는 어느학교에 재학중이었고 사망전에는 학교에서 매일 귀
가하였던가요.

답 ××대학 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면서
집에 자주 안들어 오는 편이었습니다.

문 집 밖에서 지내려면 경비가 소요되는데 어떻게 충당하였나요.

답 1주일에 5만원씩 가지고 나갔습니다.

문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쓴다고 하던가요.
답 무슨 활동인지는 모르지만 활동비가 필요하다면서 가지고 갔습니다.

문 복장은 어떤 복장으로 학교에 다녔던가요.
답 항상 푸른색깔의 바지와 잠바입니다.

문 사망한 것은 언제, 어디에서 알았나요.
답 6. 30. 12:00에 ××경찰서 ××파출소 김×× 순경의 연락을 받고 아들이 죽어 있는 장소로 갔었습니다.

문 시체는 어떤 모양이었나요.
답 오른눈이 튀어 나와있고 온몸에는 물집이 나있고 옷은 입고 나간 옷에 구두를 신고 나갔는데 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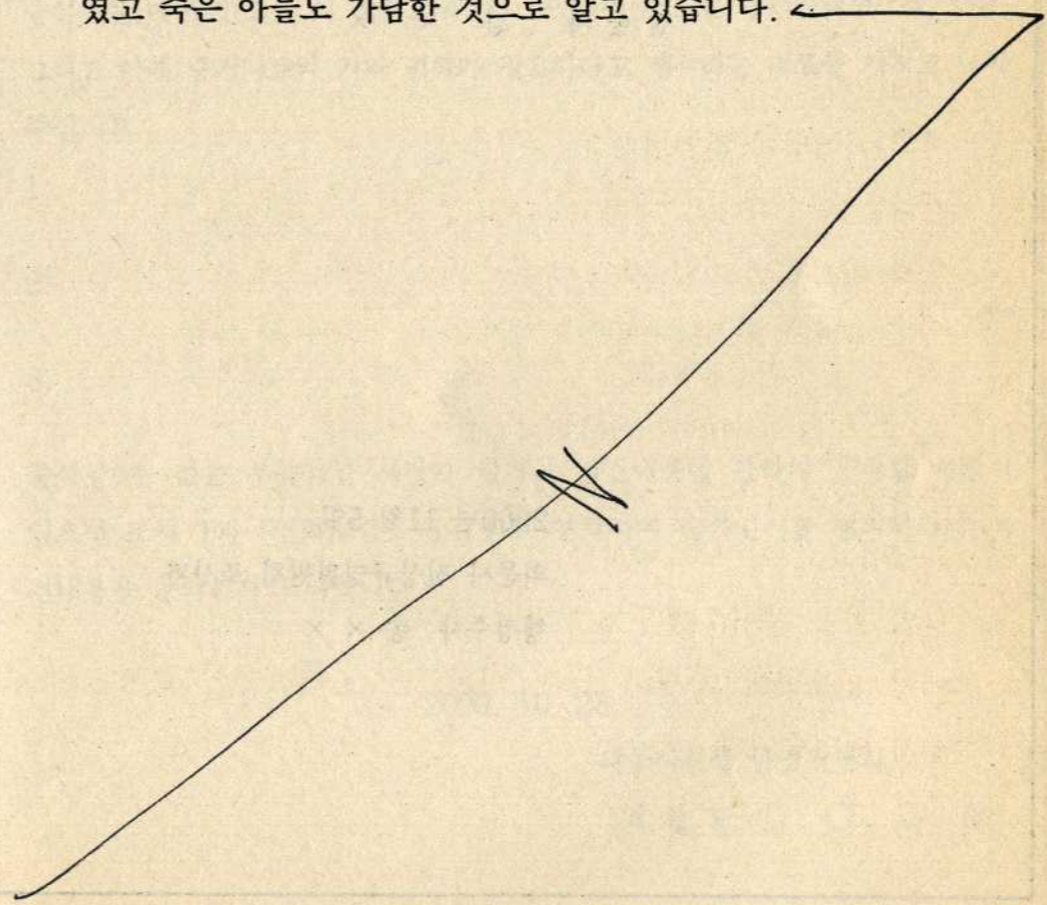
문 시체는 어떻게 하였던가요.
답 시체를 인수하라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살할 이유도 없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사망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사체인수를 거부했습니다.

문 그 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던가요.
답 수사당국에서 아들의 시체를 해부한 결과,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하여 사망원인을 밝혀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사체를 안치된 ××병원에서 인수받아 자세히 살펴보니까 머리뒷면이 골절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 그 후 사망원인이나 누가 그랬는지 밝혀졌나요.
답 그 애가 죽은 원인이나 그를 죽인 사람이 밝혀졌다면 왜 진정을 또 내겠습니까.

문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사실입니다.

문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제발 아들의 한을 요번만은 꼭 풀어줄 것을 바랍니다. 사실은 저의 남편 박××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화병이 나서 아들 죽은지 2년만에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학생들의 데모가 심하였고 죽은 아들도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의미주 바}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대로 오거나 증감변경
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인케 하다.

진술자 김 × ×

2000년 11월 5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
행정주사 송 × ×

[제 3 호]

제 호

참고인 출석 요구

전 × × 귀하

박 × ×에 대한 의문사 진정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0. 11. 6. 오전(후) 10시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출석요구서~~
2.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3. ~~증거자료~~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 1과 (전화3703 -5979)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
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 10. 28.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 ○ ○ ○ ○

진 술 서

| | | | |
|-----|-----------------|--------|---------|
| 성 명 | 전 × × ()이명 | 성 별 | 남 |
| 연 령 | 세(19 . . . 생) | 주민등록번호 | ××-×× |
| 본 적 | 서울 은평구 녹번동 ××번지 | | |
| 주 거 | 서울 강서구 가양동 ××번지 | | |
| | 자택전화 | 826-×× | 직 장 전 화 |
| 직 업 | 공 무 원(××구청 행정과) | 직 장 | ××구청 |

위의 사람은 박××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진술하다.

1. 본인은 ××구청 행정과 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은 1985. 6. 30. 07: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전철역 부근 철길옆 웅덩이에 사람(남자)이 빠져 죽어서 떠있는 것을 보고 관할 파출소인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위 파출소 강순경과 같이 현장으로 가서 떠있는 사체를 같이 인양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1. 그 날이 본인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 당시 ××동회 직원으로 근무중이었습니다.
1. 사체는 심하게 부패되어있고 사체에 수포 투성이었습니다.
1. 같이 간 강순경이 신원을 확인하고 발견경위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주었으며 그 후, 수사요원이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무렵 시내 대학생들의 데모가 연일 극렬하였습니다.

이상 진술은 사실과 상위가 없습니다.

2000. 11. 6.
진 술 인 전 × ×

진 술 서

| | | | |
|-----|------------------|--------|--------------|
| 성 명 | 강 × × ()이명 | 성 별 | 남 |
| 연 령 | 세(19 . . . 생) | 주민등록번호 | ××-×× |
| 본 적 | 서울 성동구 무학동 ××번지 | | |
| 주 거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번지 | | |
| | 자택전화 | 826-×× | 직 장 전 화 |
| 직 업 | 경 찰 관 | 직 장 | ××경찰서 보안과 |

위의 사람은 박××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진술하다.

1. 본인은 ××경찰서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은 1985. 6. 30. 07:00경 박××의 변사체 발견신고를 전××로부터 받고 같은 날 07:15경 (당시 사건발생 파출소 근무) 신고자와 함께 변사사건 발생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성명불상 남자(학생형) 25, 6세 가량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전철역에서 서울역 방향 150미터 상거한 전철 철길옆 웅덩이에 떠있는 것을 발견 신고자와 같이 건져내어 옷을 뒤진바 ××대학 학생증이었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신원을 확인한 뒤에 본서에 보고와 동시에 가족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사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머리 뒷면에 골절상이 있어서 누군가가 살해한 뒤에 익사로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그 후 본서 수사진에 의해 수사가 철저히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나 범인을 검거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은 사실과 상위가 없습니다.

2000. 11. 6.
진 술 인 강 ×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대로 오거나 증감변경
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인케 하다.

진술자 박 × ×

2000년 11월 8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
행정주사 송 × ×



메모하세요